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92
------------	-----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위탁운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제2장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위 치: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 일원
- 공사기간: 2021. ~ 2024. ※ 2024. 12. 사용승인
- 규 모: 연면적 5,970m² / 3층 4단 / 주차면수 190면

○ 세부시설현황

- 관리실, 관제실,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남·여), 펌프실, 저수조, 주차관제설비 1, 전기차충전기 10, 승강기 2

□ 위탁내용

- 위탁시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위탁자: 평창군
- 수탁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2025. 4. ~ 계속
- 위탁사무: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시설 관리 및 운영

3. 위탁운영계획

- 운영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관리인력: 3명
- 연간 예상 소요예산

(단위: 천원)

계	179,000	산출내역
인건비	81,000	관리인력 3명
사무관리비	7,000	화장지·물비누 등 소모품
	13,000	전기·소방·승강기·무인경비 등 안전관리대행 용역
공공운영비	48,000	공과금(전기, 상하수도, 통신비 등)
	20,000	시설장비 유지비
보험료	10,000	시설물 보험료

4. 위탁 타당성 검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2024.12.01.)」 35쪽의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타당성검토 실시” 항목을 살펴보면,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시장성 테스트[별첨3-1]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별첨3-1]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검토 항목 중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 · 운영에 해당하여 적정사업으로 검토 됨
- 공공시설물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성 테스트의 “세부 판단 기준 및 예시”에서 공공시설물 해당여부는 관계법령 상 공공시설물로 인정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공적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제2호에서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의 경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해당하여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단의 관리 · 운영에 해당하여 적정하다고 검토 됨

5. 기대효과

- 전문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이용객에게 제공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인력 운영 등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6. 향후계획

- 군의회 위탁 동의: 2025. 3.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5. 4.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운영: 2025. 4.

7. 참고사항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76조(설립·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7.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장성테스트[별첨3-1],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행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별첨 3-1]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 · 운영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 이란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